

중국 노동쟁의조정중재법 초안의 주요 쟁점

1. 개요

-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9차(2007.8.24~30), 30차 회의(2007.10.24~28)에서 “중화인민공화국노동쟁의조정중재법초안(中华人民共和国劳动争议调解仲裁法草案, 이하 ‘초안’)이 각각 1, 2차 심의를 통과한) 데 이어, 본 ‘초안’의 3차 심의를 앞두고 관련 논쟁이 활발함.
- 이미 2차 심의 이전인 10월 16일 중국 법학계 6명의 노동법학자들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건의서(이하 ‘건의서’)를 통해 ‘초안의 내용이 완전하지 않아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‘초안’ 수정의 필요성을 밝힘.
- 이에 중국의 입법부문은 3차 심의에 앞서 ‘초안’ 관련 쟁점을 조율하는데 주력하고 있음.

2. '초안' 관련 주요 쟁점

가. “一裁终局(중재종국판정)”규정에 대한 논쟁

- ‘초안’은 중재가 노동쟁의 해결의 강제절차이고, 규정된 범주에 속하는 노동쟁의 안건은 중재종

1)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작업위원회(法制工作委员会)는 이미 노동쟁의조정중재법초안(의견수렴본)을 공개하였음(2007.7).

국판정을 실시한다고 규정

- 규정된 범주에 속하는 노동쟁의 중재안건은 아래와 같으며, 사실상 대부분의 노동쟁의 중재안건이 이 범위에 포함됨.

- ① 노동급여(劳动报酬), 공상의료비(工伤医疗费), 경제보상(经济补偿) 혹은 법정배상금(法定赔偿金)이 해당지역 월 최저임금 기준으로 12개월분 금액 이하인 쟁의
- ② 업무시간, 휴식 및 휴가, 사회보험 등에 근로기준 적용 시 발생한 쟁의
- ③ 단체협약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쟁의

- 이는 대다수 노동쟁의 안건이 중재판정으로 종결되고, 법원에 기소할 수 없음을 의미함.

□ “一裁终局” 규정이 노동쟁의 해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 활발

- 전인대 리신량(李新良) 위원은 중재중국판정은 소송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, 노동자에게 충분한 사법구제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밝힘.

- 또한 그는 상사중재의 경우 노사관계 당사자가 중재와 소송을 선택할 수 있으나, 노동쟁의의 경우 반드시 중재를 거쳐야 하고 중재중국판정도 당사자가 선택하지 못한다고 전함.

- 전인대 대표 리리(李力)는 ‘초안’에 규정되어 있는 중재위원 관련 조건과 감독체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위험하며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

□ 한편, 전인대 양싱푸(杨兴富) 위원은 ‘초안’ 규정에 따르면 중재판정 취소 혹은 비집행 신청이 가능하나, 법원은 안건에 대해 절차상의 심사만 할뿐 실질적인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심하지 않는다고 지적

- 현재 대다수 노동쟁의 안건은 노동 사용자측이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로, 중재신청

자 대부분이 노동자임.

- 이러한 이유로 중재판정 취소 혹은 비집행 신청은 사용자측이 법적의무 이행을 미루고 쟁의처리 과정 중 노동자를 지지해 하는 등 사용자측에게 유리하게 사용됨.
- 전인대 런마오동(任茂东) 위원 역시 중재를 강제 절차화한 이유는 전문적인 노동쟁의 중재기구를 통해 쟁의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나, 취소 혹은 비집행 신청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측을 위한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지적

□ ‘一裁终局’에 대한 대안 제시

- ‘건의서’는 노사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중재 혹은 소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두 가지 경우 모두 각각 종국판정이 되게 할 것을 제시
- 이는 노동중재기구와 법원의 부담을 줄여주고, 중재와 소송간의 경쟁을 통해 중재의 간편하고 신속한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함.
- 런마오동(任茂东) 위원도 당사자가 중재나 소송을 선택하게 하고 각각 종국되도록 하는 방법이 적합하다고 주장
- 반면 한 관계자는 위 방식을 채택했을 경우 대다수의 노동쟁의 안전이 법원에 몰려 법원의 심사 부담은 증가하고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의 심사 능력은 등한시 될 수 있다고 지적
- 중국 노동관계학원 노동법연구실 주임이자 ‘건의서’ 작성에 참여한 왕상첸(王向前)은 현재의 “一裁终局” 규정을 노동자측이 “一裁终局”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시
- 왕상첸(王向前)은 모든 노동쟁의 안전에 대해 △ 중재 이후 노동자 측에게만 기소 권리를 부여(사용자측에게는 기소 권리 非부여) △ 단 중재판정 취소 혹은 비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제한적 부여 등을 주장

- 전인대 상무위원 리신량(李新良) 역시 사용자측의 소송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,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측은 강자에 해당하므로 대등하지 않은 소송권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임.
- 왕상첸(王向前)은 쟁의해결 과정에서도 노사관계의 ‘형식상 평등하나 사실상 불평등’한 특징이 남아 있으므로,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우선 보호하는 노동법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

나. 중재 감독 및 조정시스템 관련 쟁점

□ 중재에 대한 감독과 중재위원에 대한 책임 규정 강화

- 전인대 쟁공청(郑功成) 위원은 ‘초안’ 내용에 중재에 대한 감독과 중재위원의 법적 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지적하고, 중재위원회의 판정이 공정하지 않아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했을 경우, 중재위원회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
- 전인대 장쯔젠(张志坚) 위원도 중재위원 행위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조정위원회, 중재위원회 및 관련 종사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
- 리리(李力) 역시 중재위원에 대한 책임규정을 명확히 하고, 노동부문과 노조의 중재위원회에 대한 감독시스템을 강화시킬 것을 건의
- 양싱푸(杨兴富) 위원은 법원이 중재에 대한 감독시스템을 건립할 것, 중재 재심제도를 만들어 중재판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, 중재위원에 대한 감독시스템을 완비할 것 등을 건의

□ 조정위원회의 규범화와 노동조합의 역할 강화

- 쟁공청(郑功成) 위원은 ‘초안’은 기본법률인 노동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규정을 제시해야 하며 노동법과 서로 모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

- 현행 노동법은 기업노동쟁의 조정위원회는 노동자대표, 사용자측대표 및 노동조합대표로 구성되고, 노동쟁의 조정위원회의 주임은 노동조합대표가 맡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반면 ‘초안’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노동쟁의 조정위원회는 노동자대표와 기업대표로 구성되고 노동쟁의 조정위원회 주임은 노사 양측의 추천으로 선정됨(노동자대표는 노동조합원 혹은 전체 노동자의 추천으로 선정되고 기업대표는 기업책임자가 지정).
- 양싱푸(楊興富) 위원은 ‘초안’의 위 규정에 대해 노동조합의 반발이 크다고 전하며, 그 역시 노동조합이 기업노동쟁의 조정위원회를 주관하는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을 건의함.
- 노동자가 약자인 상황에서 노동자대표와 기업대표가 함께 추천을 통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 사실상 기업이 주임을 지정하게 되고 조정위원회에 영향력을 미쳐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임.
- 중국 노동법학계 권위자인 인민대학법학원 화이(樊海)교수는 ‘초안’에 규정된 조정위원회의 종류가 다양해졌으나, 이러한 조정위원회와 노동조합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노동조합이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.

다. 정부의 노동관련 법 집행 책임 강화

- 중국변호사협회 법률고문이자 공익사무위원회 부주임 퉁리화(佟麗華)는 노동관련 위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노동쟁의 안건이 지속적으로 대폭 증가하였다고 지적
- 그는 노동감찰 역량과 위법행위조사 능력을 향상시켜 위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
- 현재 노동관련 위법기업은 즉시 처벌되지 않고 노동자 스스로가 노동쟁의 처리방법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나, 이는 정부가 위법행위를 조사해야 할 책임을 약자인 노동자에게 미룬 것으로 위법자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임.

□ 전인대 상무위원 팡신(方新)은 노동쟁의와 위법행위를 엄격히 구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노동감찰 부문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

- 왕상첸(王向前)은 근로기준 위반안건은 위법행위로 분류되어 노동감찰 부문이 법에 의거해 조사해야 할 부분이지, 노동쟁의로 분류되어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와 법원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

<참고 자료>

《21세기经济报道》, “由劳方决定是否 ‘一裁终局’” , 2007.11.14

《21세기经济报道》, “争议《劳动争议调解仲裁法》”, 2007.11.9

《21세기经济报道》, “六学者‘上书’全国人大建言劳动争议处理立法“, 2007.10.26

‘劳动争议调解仲裁法草案’ 专题网站, http://www.npc.gov.cn/npc/zt/node_2986.htm